

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윤영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6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5.

발의자 : 윤영일 · 정인화 · 정동영

이원욱 · 이언주 · 주승용

이개호 · 김관영 · 박선숙

이학영 · 송기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세, 과태료 납부, 의무보험 가입,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,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‘대포차’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, 대형 교통사고나 빵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,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24조의2제2항).

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2항 중 “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
2.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
3.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① (생 략)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<u>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</u> <u>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</u> <u>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u> <u>&lt;신 설&gt;</u>	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경우에는-----</u> <u>-----.</u> <u>1.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</u> <u>요청이 있는 경우</u> <u>2.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</u> <u>경우</u> <u>3.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</u> <u>인이 요청하는 경우</u>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
③ ~ ⑥ (생 략)	